#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3. 10. 선고 2015고단 135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 대 구 지 방 법 원 포 항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1358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홍민유(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3. 10.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범죄사실

####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길에서 식당으로 들어가려하다 피해자  $D(\varphi, 45M)$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22:2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D과 지구대 근무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새끼야 니 뭐 먹고 사냐, 똥구멍으로 뭐 쳐먹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3. 위계공무집행방해
- 가. 피고인은 2015. 9. 20. 03:58경 포항시 남구 H에서 자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어제 잡힌 I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일당에게 잡혀와 있다,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4:0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중국여자에게 납치를 당했다,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05:15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펜션'에서 119에 전화하여 "집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경 N 등 소방관 21명과 소방차 7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소방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09:54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람 죽었다, 죽어있다, 빨리와 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0 등 경찰관 1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0. 10:1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6-59에 있는 '3차 부영 아파트' 305동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남자가 죽어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 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1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0. 13:37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83에 있는 '주은 리 버타운' 101동 앞 4차로에서 119에 전화하여 "불이 났다, 용덕빌라 가동 옆 빌라 2, 3, 4층이 다 타고 있다, 택시도 불타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소방서 오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Q 등 4명과 소방차 2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소방서 로부터 연락을 받은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P 등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계로써 112, 119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경찰관, 소방관이 하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N, Q, P, D,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S, T의 각 진술서
- 1. 119 출동지령서 사본
-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0. 13:37경 위계공 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빙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후 6차례에 걸쳐 납치가 되었다거나 사람이 죽었다거나 불이 났나는 등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여러 차례 저질러졌으 나 같은 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 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 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 파사 한성수